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(서삼석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호 2854

발의연월일: 2024. 8. 14.

발 의 자:서삼석·조인철·임호선

이기헌 · 염태영 · 이용선

박수현 · 윤준병 · 전재수

신정훈 의원(10인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현행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어로·양식어업 등에서 발생하는 사업소득에 대하여 비과세 혜택을 부여하고 있음.

그러나 시행령에서 어로·양식어업의 비과세 한도를 연 5천만원으로 정하고 있어, 어로·양식어업에 종사하고 있는 어업인들의 소득 증대를 위하여 해당 한도를 삭제할 필요가 있음.

또한, 천일염생산업은 비과세 혜택 대상에서 제외되어 있어, 어로·양식어업에 종사하고 있는 어업인과 천일염생산업에 종사하고 있는 어업인 간 과세형평성을 개선할 필요가 있음.

이에 어로·양식어업에서 발생한 사업소득을 전액 비과세되는 소득으로 하고, 천일염생산업을 비과세소득 대상 사업으로 포함하려는 것임(안 제12조제2호).

법률 제 호

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

소득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2조제2호사목 중 "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어로어업 또는 양식어업"을 "어로어업(원양어업은 제외한다), 양식어업 또는 천일염생산업"으로 한다.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법은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비과세소득에 관한 적용례) 제12조제2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한다.

신・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		
제12조(비과세소득) 다음 각 호의	제12조(비과세소득)		
소득에 대해서는 소득세를 과			
세하지 아니한다.			
1. (생 략)	1. (현행과 같음)		
2. 사업소득 중 다음 각 목의	2		
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			
가. ~ 바. (생 략)	가. ~ 바. (현행과 같음)		
사. <u>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어</u>	사. <u>어로어업(원양어업은 제</u>		
로어업 또는 양식어업에서	외한다), 양식어업 또는 천		
발생하는 소득	<u>일염생산업</u>		
3. ~ 5. (생 략)	3. ~ 5. (현행과 같음)		